12. 조명 및 환기

12.1 조명

- (1) 막장의 균열 및 지질상태 터널벽면의 요철정도, 부석의 유무, 누수상황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.
- (2) 근로자의 안전을 위하여 터널 작업면에 대한 조명장치 및 설비를 확인하여 야 하며 조도의 기준은 다음 <표 1>을 준용한다.

작업구분	기준
막장구간	60 LUX 이상
터널중간구간	50 LUX 이상
터널 입출구, 수직구 구간	30 LUX 이상

<표 1> 작업면에 대한 조도 기준

- (3) 조명설비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단선, 단락, 파손, 누전 등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- (4) 작업중 분진이나 매연으로 인하여 조도가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·관리를 하여야 한다.
- (5) 터널내부에 설치된 조명용 전선의 절단, 누전 등으로 전력공급이 차단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터널외부에 설치된 주 분전반에서 각각 별도의 분기회로 에 접속하는 2계통의 조명용 배선을 설치하되 각 배선별 조명등을 교대로 설치하여야 한다.
- (6) 터널내부에서 외부전원의 단전으로 조명이 꺼질 때 자동적으로 점등되는 충전식 배터리를 전원으로 하는 비상조명등을 터널길이 100m당 1개소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